반려사유 1 | 사업결과 증빙서류

사람과세상 PEOPLE&SOCIETY

04
사업 결과

첨부파일

1. 사업결과 증빙서류

2.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질문 1. 지역사업형(또는 기타공익증진형) 사회적협동조합이고 주사업 판단 기준은 **사업비 지출**입니다. 사업결과 증빙서류는 무엇을 첨부하면 될까요?



지역사업형(또는 기타공익증진형) 사회적협동조합이고 판단 기준이 사업비 지출일 때

✓ **구분경리 된 재무상태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



만약, 구분경리된 재무상태표가 없다면!

✓ **결과보고증빙_주사업비지출내역(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홈페이지
소통공간-자료실-협동조합-[서식]주사업비지출내역_경영공시 사업결과증빙 다운로드

바로가기 https://vo.la/HGZS

작성 방법 | 사업결과 증빙서류

사람과세상 PEOPLE&SOCIETY

예시 상황

✓ **정관 제 60조 (사업의 종류)** ※ 정관마다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조항의 번호는 상이할 수 있음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한다.

1, 경기도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서비스업
2. 아동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3. 로컬푸드 구매 및 판매를 위한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커피전문점 운영 및 디저트 판매사업

주요 확인사항

✓ **정관의 사업의 명칭과 순서대로 증빙서류에 기재**
사업비 지출이 0원이라 할 지라도 정관상의 사업의 명칭과 순서대로 기재 후에 사업비 지출을 0원으로 기재

✓ **지출한 사업 내용과 정관상 사업의 명칭과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금액 기재**
'00 학교 방과후교육사업' 의 지출은 1항 1호의 사업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항 1호의 사업비 지출로 기재

✓ **경영공시페이지** 04 사업 결과 / 지역사업형 사업비(원) **역시 사업의 명칭은 증빙서류와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하고 소계 금액만 입력**

주사업 사업비 지출 내역 (결과보고 증빙)

회계연도	2019년도		기관명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예시)
구분			사업비(단위: 원)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총계(A)			50,000,000	40,000,000
주사업 (정관 참조)	경기도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서비스업	소계	30,000,000	35,000,000
		인건비	10,000,000	20,000,000
		교육재료비	10,000,000	10,000,000
		운영비	10,000,000	5,000,000

	아동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소계	15,000,000	0
		인건비	10,000,000	0
		운영비	5,000,000	0
	로컬푸드 구매 및 판매를 위한 농수산물 직판장운영사업	소계	0	0
		인건비	0	0
		유통비	0	0
		운영비	0	0
	소계(B)		45,000,000	35,000,000
기타 사업 (정관 참조)	조합원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강사비	500,000	0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워크샵 비용	500,000	0
	조합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네트워크 회의비	500,000	0
	커피전문점 운영 및 디저트 판매사업	카페 운영비	3,500,000	5,000,000
	소계		5,000,000	5,000,000
주사업 비율 (C=B/A) (%)			90 %	87.5 %